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2. 2. 10.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46호로 2022년 1월 24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현재의 청원 심사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와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현재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관련 상위 법령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청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발의한 안건임.
- 본 규칙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예규 형식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1992년 제정)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운영심사처리내규」(1991년 제정)를 폐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으로 정비한 규칙안임.
- 이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된 것임.
- 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영등포구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 제3조와 제4조는 청원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소개의원과

- 청원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불수리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안 제5조는 접수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의장이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안 제7조와 제8조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청원심사에 필요시 소개한 의원은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청원인 등의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2가지(영등포구청장이 처리 또는 의회에서 처리)로 구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
 -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청원인에 대한 통지와 청원 철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향조정된 규칙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권리구제와 참여 민주주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제정안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2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